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7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엄셋별 의원

1. 제안이유

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'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'에 따라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추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조항 삭제(안 제4조제1항)
- 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(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)
 - 구역 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규정 삭제
 -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규정 삭제

- 해당 구역 전체 상인의 명부 신설
- 해당 구역 지번 및 면적 신설

다. 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신청서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서식 신설
(안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, 안 제4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- 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- 3) 입법예고 : 2024. 2. 5. ~ 2. 13.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다음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”를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”로 한다.

2.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

3. 해당 구역 지번과 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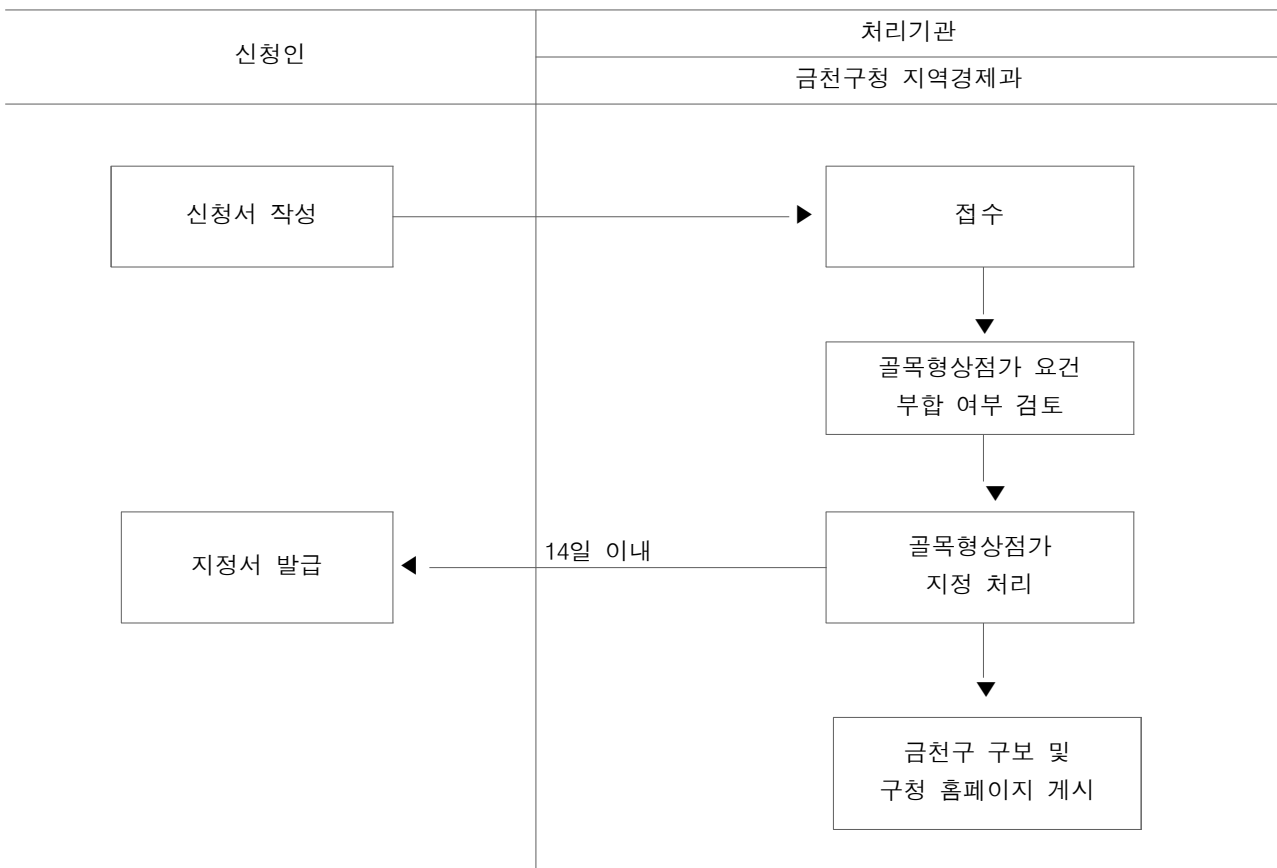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

골목형상점가 지정서

1. 상점가명 :
2. 대명자명 :
3. 소재지 :
4. 면적/점포수 :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금천구청장

직인

(뒤쪽)

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이력

변경일자	변경내용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)</p> <p>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<u>다음</u>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수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.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u></p> <p>3. <u>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<u>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</u>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)</p> <p>① ----- ----- <u>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</u> ----- ----- . <u><후 단 삭제>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</u></p> <p>3. <u>해당 구역 지번과 면적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</u> ----- ----- 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지 제1호서식] 골목형상점가 지정 (변경)신청서</p> <p>[별지 제2호서식] 골목형상점가 지정서</p>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9. 29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09호, 2021. 9. 29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2. “상인조직”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)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
2.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

제4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)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수에서 제외한다.

1.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
2.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.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3.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
4.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

5.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
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,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동시설,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

2.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, 디자인 개발

3.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

4. 축제,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

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7조(골목형상점가의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
2.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3.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1. 명칭
2. 대표자
3. 소재지
4.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(제1209호, 2021.9.29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[시행 2023. 10. 31.] [법률 제19823호, 2023. 10. 3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0. 19.] [대통령령 제33769호, 2023. 9. 26., 일부개정]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20. 8. 11.]

□ 소상공인기본법

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23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